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96
----------	------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2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한강수질 회복,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 시민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함.

한편 특별위원회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장 및 교육감, 관계 공무원에 대한 회의장내 질서 유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나. 정례회 집회일의 근거 법령을 삭제함(안 제8조).
- 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함(안 제33조제1항제7호 사목 신설).
- 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 반드시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 또는 의견을 듣도록 하고, 활동기간 연장을 1회, 6개월 이내로 한정함(안

제37조).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함(안 제39조의2 삭제).

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배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48조2 신설).

사. 시장과 교육감, 관계 공무원에 대한 회의장 내 질서유지 규정을 정비함(안 제52조 및 제60조).

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9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34조”를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 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0조”를 “법 제82조”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의안 발의)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한다.

- ② 의안 발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바목 중 “법 제111조제1항제1호”를 “법 제12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제4항 중 “제39조의2”를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의원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 이상의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를 “법 제126조부터 제1

29조까지”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의2 중 “법 제40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제58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을 “제1항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퇴장당한 시장, 교육감,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에게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에서의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 중 “의회 회의규칙”을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회기) ①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설></u></p> <p style="padding-left: 20px;">②·③ (생략)</p> <p>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2. (생략)</p> <p>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제7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 ----- ----- ----- ----- ----- ----- ----- -----</p> <p style="padding-left: 20px;">1. 2. (현행과 같음)</p> <p>제9조(심의) ① ----- ----- ----- 제150조----- ----- ----- -----</p> <p style="padding-left: 20px;">② ----- 법 제49조 제1항----- ----- 법 제142조----- ----- -----</p>

제1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나 법 제70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
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
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
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
고,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
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

제1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법 제82조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의안 발의) ① 의원은 10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한다.

② 의안 발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
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
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

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 다. (생략)

바.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

2. ~ 6. (생략)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 ~ 바. (생략)

<신설>

8. ~ 10. (생략)

② (생략)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서 제출) ① ----- 법 제91조-----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바. 법 제124조제1항제1호-----

2. ~ 6. (현행과 같음)

7.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8.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

③ ~ ⑧ (생략)

<신설>

⑨ (생략)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39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회의규칙 -----

-----.

<삭제>

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2(공청회 및 토론회)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② (생략)

③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 및 교육청 관계

제47조2(공청회 및 토론회) ① -----

----- 회의규칙 -----

-----.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의원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 이상의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4. ~ 7. (생략)

④ (생략)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의2(서류제출요구) 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회의록) ① ~ ⑤ (생략)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4.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의2(서류제출요구) ----- 법 제48조-----

제58조(회의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회의규칙-----.

제60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 ③
(생략)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 교육감,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신설>

제64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1항 각 호의 -----

-----.

⑤ 제4항에 따라 퇴장당한 시장, 교육감,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에게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

----- 회의규칙 -----
-----.